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방 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8732호, 2022.01.11. 공포, 2022.7.12. 시행)에 따라 유선방송국 설비에 대한 준공검사 의무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항을 검사하는 재허가 검사 관련 조항은 유지되고 있어 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재허가 검사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허가 검사 제도 폐지”

- 1) 유선방송국 설비에 대한 재허가 검사 제도 폐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선방송국 재허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재허가 검사 수행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삭제(현행 제16조제5항 일부 삭제)
- 2) 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검사 폐지 추진에 따라 재허가 검사 권한 위임 및 위탁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68조제1항1의2호 및 제3항제1호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또는”을 “위하여”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3(수수료)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삭제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수료(제67조제1항관련)

구 분	금 액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20만원 10만원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20만원
3.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	10만원
-전광판 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5만원
4.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20만원
5.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20만원
6.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20만원
7.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5만원
8.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변경승인, 변경등록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 -법 제9조제6항 및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송망사업의 변경등록	10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2만5천원
8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	10만원
9.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10만원 2만5천원
10.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	10만원
11. 삭제 <2022. 6. 28.>	
12. 삭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 ④ (생략)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u> 는 제3항에 따라 재허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방송품질 유지와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u>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u>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및 시설에 대한 검사(이하 “재허가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u>방송통신위원회</u> ----- ----- ----- --- <u>위하여</u> ----- ----- ----- ----- ----- -----.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68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68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6조제5항에 따른 <u>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검사</u>	<삭 제>			
1의3. ~ 4. (생략)	1의3.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
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
해야 한다.

1. 제16조제5항에 따른 중계유
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검사

2. 삭 제

3. (생 략)

별표 3 수수료

수수료(제67조제1항관련)

구 분	금 액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20만원 10만원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20만원
3.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 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10만원 5만원
4.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20만원
5.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20만원
6.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20만원
7.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5만원
8.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변경승인, 변경등록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 -법 제9조제6항 및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송망사업의 변경등록	10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2만5천원
8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	10만원
9.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10만원 2만5천원
10.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	10만원
11. 삭제 <2022. 6. 23.>	
12.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검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검사	40만원 30만원

③-----

-----.

<삭 제>

3. (현행과 같음)

별표 3 수수료

수수료(제67조제1항관련)

구 분	금 액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20만원 10만원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20만원
3.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 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10만원 5만원
4.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20만원
5.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20만원
6.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20만원
7.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5만원
8.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변경승인, 변경등록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 -법 제9조제6항 및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송망사업의 변경등록	10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2만5천원
8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	10만원
9.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10만원 2만5천원
10.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	10만원
11. 삭제 <2022. 6. 23.>	
12.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6543